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14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・김승수・김용판

박 진 · 양금희 · 윤한홍

이 용・이주환・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·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, 등록의 말소, 보조금의 지원, 지원사업의 선정등, 사업계획서 제출,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 규정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).

법률 제 호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"를 "중 앙행정기관의 장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 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(이하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"이라 한 다)"로. "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중앙행정기관의 장. 시 · 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"을 "중앙행정기관 의 장.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"으로 한다.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중앙행정기관의 장.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장은" 으로 하고. 같은 조 제3항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"를 "중앙행정기관의 장.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" 로 하다.

제5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"행정안전부장

관,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"행정안전부장 관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·도의회의장"을 "국회의장, 해당 시·도의회의장 또는 해당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장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"를 "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"를 "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"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) ① 이 법이 정한 지원	제4조(등록) ①
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	
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	
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	<u>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</u>
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	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
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	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
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	<u>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</u>
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	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
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	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
<u>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</u> 그 등	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
록을 수리하여야 한다.	<u>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</u>
	<u>장(이하"인구 100만 이상 대도</u>
	<u>시의 장"이라 한다)</u>
	<u>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</u>
	・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
	<u>대도시의 장은</u>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	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
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	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
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	도시의 장은
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	
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	
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등록	
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	

-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 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<u>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</u>
 <u>·도지사가</u> 제1항에 따른 등록
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
 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
 한다.
- 제5조(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 원 등) ① (생 략)
 - ② <u>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</u> 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 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 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원) ① 행정안

전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
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
②
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
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
<u> 장은</u>
<u>.</u>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
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
도시의 장이
<u>.</u>
제5조(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
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
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
<u> 장은</u>
제6조(보조금의 지원) ① 행정안

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"등록 비영리민간단체"라 한다)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(이하 "공익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7조(지원사업의 선정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의 유형을 결정한다.

② <u>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</u> <u>도지사는</u> 제1항의 사업유형내 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 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.

	전부정	}관,	시 •	도지사	또는	인
	구 10	0만	이상	대도시]의 정)은
				· — — — -		
				· — — — -		
	2.3	8) (현	현행과	같음)		
제	7조(ス] 원시	 업의	선정등	() (1)	행
	정안전	러부정	나라.	시・도	지사	또
		_ ' `	<i>.</i>			
				이상		
	는 인]의
	는 인]의
	는 인]의
	는 인]의
	는 인]의
	는 인]의
	는 인 장 	7 :	100만		<u> </u>	은
	는 인 장 2 <u>호</u>	구 :	100만 	이상	대도시 시·도	일 은
	는 인 장 2 <u>호</u>	구 :	100만 	이상	대도시 시·도 기상 디	일 은
	는 인 장 ② 호 사 또	구 :	100만 	이상	대도시 시·도 기상 디	의 은

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 사업선정위원회는 <u>국회의장 또</u> 는 해당 시·도의회의장이 추 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 로 구성한다.

④·⑤ (생 략)

제8조(사업계획서 제출) 등록 비 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과 내용, 소요경비,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보고서 제출 등)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

	•
	_
	_
③	_
국회의장, 해당 시	.]
·도의회의장 또는 해당 인구	
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장-	
	_
<u>.</u>	
· ④·⑤ (현행과 같음)	
제8조(사업계획서 제출)	
게O그(기百개 두기 기계절)	
	_
	_
	_
	_
	_
행정안전부장관, 시 · 도지시	}
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	.]
의 장	
제9조(사업보고서 제출 등) ①	
	_
	_
	_
	_

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<u>행정안</u> 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<u>행정안전부장관 또는</u> 시·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, 사업성과,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2조(보조금의 환수등) ① <u>행</u> 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 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.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<u>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</u>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

<u>행정안전부</u>
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인구
<u>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</u>
·.
②
<u>행정안전부장관,</u> 시·도지
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
<u>시의 장은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보조금의 환수등) ① <u>행</u>
<u>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</u>
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
<u>장은</u>
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
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

여	환수를	하는	경우	-에	보	조금	ユュ
을	반환할	비	영리'	민간	단	체기	}
フ] で	한내에 여	이를	반환	하지	.]	아니	-
한	때에는	국세	체납	처분	<u>1</u>	또는	<u>-</u>
기	방세체납	처분의	의 예	에	의	하ㅇ	4
0]	를 징수형	나다.					

시의 장은